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29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8.20.)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병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병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의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의 사업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26조의3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8.20.)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안 제5조가 등록의 신청 뿐만 아니라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목을 수정하고, 개정안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해서만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두어 항만 종합서비스업자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도 직권 말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은 부령에서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을 ‘장비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한정함(안 제5조 등).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5조가 등록의 신청 뿐만 아니라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목을 수정하고, 개정안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해서만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두어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도 직권 말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부령에서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을 ‘장비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한정함(안 제5조 등).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전단 중 “권리”를 “등록 직권 말소, 권리”로, “제23조”를 “제5조제3항·제4항, 제23조”로 한다.

안 제26조의3제3항 중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추가하거나”로 한다.

안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중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추가 또는”으로 한다.

안 제31조제1호의2 중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추가 또는”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등록의 신청)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조(등록의 <u>신청</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u> ④ <u>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u>	제5조(등록의 <u>신청</u> <u>등</u>)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u>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u>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 ----- <u>항만운송사업자</u> ----- -----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② (개정안과 같음)

<u>한 자(이하 “항만운 송사업자”라 한다)</u> 의 등록에 따른 권 리·의무를 승계한 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6조의2(항만종합서 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의 등록을 신청하 려는 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획을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항만종합서 비스업의 등록 등)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항만종합서 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의 등록을 신청하 려는 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획을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항만종합서비스
업자의 권리·의무
의 승계, 사업의 정
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
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
자”로 본다.

제26조의3(사업의 등
록 등) ① · ② (생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
----- 등록 직권

말소, 권리-----

----- 제 5
조 제 3 항 · 제 4 항,
제 23 조-----

[illegible]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 ② (개정)

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u>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u>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u>	과 같음) ③ ----- ----- ----- ----- -----<u>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u>-----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u>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u>	안과 같음) ③ ----- ----- ----- ----- -----<u>추가하거나</u>----- ----- ----- ----- -----. ④ ~ ⑨ (개정안과 같음)
---	---	---

한 선박연료공급선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
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
요한 자본금, 시설,

선박연료공급업
으로서 제7항에
따른 등록 기준
에 적합한 연료
공급선(운항구간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
로 등록한 선박
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2. 제7항에 따른 등
록 기준에 적합
한 연료공급차량
을 장비로 등록
한 선박연료공급
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3. 선박수리업

4. 선용품공급업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
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u>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u>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 ----- ----- <u>항만운송관련사업자</u>----- ----- -----.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개정안과 같음)

1. ~ 3. (생략)

1. (생략)

1의2. 제26조의3제3항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
를 추가하거나 그 밖
에 사업계획 중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1의2. -----

--추가 또는 변경하
거나 그 밖에 사업계
획 중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illegible]

1. (개정안과 같음)

1의2. -----

추가 또
는-----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 ----- ----- ----- ---	제31조(벌칙)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u>추가하거나 그 밖</u> 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1의2. ----- ----- ----- -- <u>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u> 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 -----	1의2. ----- ----- ----- -- <u>추가 또는</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전단 중 “권리”를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권리”로, “제23조”를 “제5조제3항·제4항, 제23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중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을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으로,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을 “업종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수리업
4. 선용품공급업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추가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추가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
례)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료공급차
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의 <u>신청</u>)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5조(등록의 <u>신청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u><신 설></u>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u>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u> <u>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u> <u>을 발급하여야 한다.</u>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u>제4조에 따라 항만</u> <u>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u> <u>“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u> 의 등 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 ----- <u>항만운송사업자</u> ----- ----- --.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u>권리</u> · <u>의무의 승계</u> ,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u>제</u> <u>23조</u> 및 <u>제26조</u>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 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u>등록</u> <u>사항의 직권말소, 권리</u> ----- ----- ----- <u>제5조제3</u> <u>항·제4항, 제23조</u> ----- -----. ----- -----.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③ -----

-----변경하려는-----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업종은-----
-----.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다)

2.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수리업

4. 선용품공급업

⑦ -----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 3. (생략)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

-----항만운송관련사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

-----.

한다. 1. (생략)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 비를 <u>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 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u> 변경한 경우 2. ~ 5. (생략) ② (생략)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 비를 <u>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 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u> 변경하여 선박 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생략)	--. 1. (현행과 같음) 1의2. ----- ----- ----<u>추가 또는</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u>추가 또는</u>----- ----- 2. (현행과 같음)
---	--